

2026년 하반기 검역해소품목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검역조건 개정 등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인 판로확대 지원

☐ 지원대상 : 바이어 및 대형 유통업체

☐ 지원품목 : 포도(' 21), 쌀(' 22), 파프리카(' 25), 단감(' 25, 타결)

☐ 지원내용

구 분	온·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지원대상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비율	80%	100%
지원한도	50백만원	100백만원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신청방법	내부 전자문서로 신청	
선정시기	정기(상·하반기), 수시(필요시)	
선정방법	사업계획 평가(국가, 품목 등)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사업의무액	지원금액 100% 의무액 달성 필요	

☐ 상반기 사업 추진일정(안)

- 사업 수행기간 : ~ '26. 11. 30(월) 이내

2. 사업 추진내용

☐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 지원대상 : 해외 바이어 및 대형 유통업체
- 지원비율 : 정산 승인액의 80~100%
 - (바이어) 80% / (대형 유통업체) 100%
- 지원한도 : (바이어) 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100백만원
 - 한도 이내 신청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을 조정하지 않으며, 한도 초과 사업 제출 시 예산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한도 초과 예산 사업 제출 시 aT 협의 및 초과예산 계획 사유 명시 필수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활동 관련 제반 비용
 - 판촉 행사 : 행사장 임차·설치비, 입점 수수료, 홍보·시식 등 행사 추진 관련 비용
 - * 시식물품비는 배정금액의 최대 20% 한도 지원
 - 상품개선 : 포장 디자인 개선비용, 규격 변경을 위한 재작업 비용
 - * 자산성 항목(동판·금형 제작비) 지원 불가
 - 거래알선 : 바이어 리스트를 보유한 전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비용 등
 - 현지 저온 운송비(해외지사):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내륙지역 냉동·냉장 유통비
 - *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의무액 달성

- 사업 의무액 : 선정업체 지원금액의 100% 사업의무액 달성 필요
 - 미달성 시, 달성 비율(%)에 따라 최종지원액 감액
 - * 사업 의무액 달성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예 80.488% → 80.48)

※ 최종지원액 = [정산 승인액(①×②) × 사업의무액 달성 비율(③)]

☞ (①사업 수행업체 실집행비용 × ②지원 비율) × ③사업의무액 달성 비율(%)

· 정산 승인액(①×②)은 당초 배정된 국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업체 실집행비용은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aT가 최종 승인한 집행비용을 의미

[사업의무액 미달성시] 정산승인액 < 배정예산	[사업의무액 미달성시] 정산승인액 ≥ 배정예산								
<table border="1"> <tr> <td>배정예산 30백만원</td><td>지원비율 80%</td></tr> <tr> <td>실집행금액 20백만원</td><td>수출의무액 30%</td></tr> </table>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비율 80%	실집행금액 20백만원	수출의무액 30%	<table border="1"> <tr> <td>배정예산 30백만원</td><td>지원 비율 80%</td></tr> <tr> <td>실집행금액 60백만원</td><td>사업의무액 70%</td></tr> </table>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60백만원	사업의무액 70%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비율 80%								
실집행금액 20백만원	수출의무액 30%								
배정예산 30백만원	지원 비율 80%								
실집행금액 60백만원	사업의무액 70%								
= (20 * 0.8 = 16백만원, 정산지급액 16백만원 적용) → 달성 비율 30% 적용 = 16백만원 * 0.3 = 최종지원액 4백80만원	= (60 * 0.8 = 48백만원, 지원한도 30백만원 적용) → 달성 비율 70% 적용 = 30백만원 * 0.7 = 최종지원액 21백만원								

□ 기타 사항

- 사업비 정산
 - (정산기준) 지원비율 · 내용, 공통기준 및 정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 정산 및 결과보고
 - (바이어) 해외지사에서 사업 운영 · 관리 및 정산 후 결과보고 본사 제출
 - * aT 해외지사의 사업 추진현황 점검내역 포함하여 결과보고
- 유의사항
 - 온 ·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 타국산 제품 혼입 시 판촉 지원 불가
 - 계획변경 : 행사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aT본사로 변경 보고

3. 사업 신청

□ 실시대상 : 현지 수입 바이어 · 대형 유통업체

□ 신청방법 : 행사권역 aT 관할 해외지사로 이메일 신청 *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 첨부)

- 접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해당 품목 취급 증빙 등(공식 수입신고 서류 또는 구매관련 증빙)

□ 접수기한 : 2026. 7. 3(금) 16:00 (중국시간)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권역	aT 해외지사	연락처
중국(화북, 서북, 허난성 및 서남 일부·쓰촨성·충칭)	베이징지사	beijingat@at.or.kr 86-10-6410-6120
중국(화동, 화중, 화남 및 서남일부·윈난성·구이저우·시짱)	상하이지사	shanghaiat@at.or.kr 86-21-3256-6325
중국(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몽골	다롄지사	dalianat@at.or.kr 86-411-3960-3361 82-070-5223-4368(몽골)
중국(산둥성)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qingdao_logistics@at.or.kr 86-532-6696-2229
중국(홍콩, 마카오, 광둥성), 대만	홍콩지사	charles.kim@at.or.kr 852-3704-6903

참고 1 정산 / 지원기준

1. 공통기준

- 모든 사업비용은 해당 행사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한하며, 자산성 항목(유형·무형) 불인정
-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시는 원본 대조필 날인
 - * 각국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제출이 원칙이며, 사후 변동 가능 증빙은 입금증이나 송금확인서(정산) 등 확정 증빙 첨부
- 모든 증빙 및 제출서류는 국문 번역표기 후 제출, aT는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구 가능
- 국내 집행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유 : 부가가치세 환급
- 현지 화폐 집행비용은 KEB 하나은행 행사기간(또는 계약기간) 평균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적용
- 명시되지 않은 정산기준은 관련 세부 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2. 온 ·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지원항목	세부내역	제출서류
임 차 관련비용	○ 판촉행사장 임차비 및 입점수수료 - 품목등록비, 점포 Listing Fee 이외 단순 매출 수수료는 제외	○ 유통업체(매장) 발행 증빙서 또는 임차계약서(금액표시) - 임차기간, 규모, 금액, 지급방식 등 명시 ○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
장 치 관련비용	○ 판촉 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제작 설치비 및 임차비	○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 - 사양, 수량, 임대일수 등 명시
홍보비	○ 홍보물 기획, 디자인 및 제작 - 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 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SNS, 온라인 시식 등 판촉 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	○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 ○ [결과보고] 홍보물·매체광고 내역 및 홍보 현황 사진 - 구매·제작물, 수량, 활용 내역 등 ○ (온라인) 캡처화면 및 홍보주소(URL) 명시 ○ (이벤트) 이벤트 용역 활용 시 용역계약서 첨부 - 계약·행사기간, 활동내역, 금액, 지급방식 등 세부 내역 명시
	○ 증정품·경품·포인트·쿠폰·배송료 등 - 전체 배정 예산의 25% 한도 내 지원 - 증정품 및 경품(20%), 포인트+쿠폰(합산)(10%), 배송료(10%), 증정품+샘플(합산)(5%) * 증정품·경품은 한국 농식품(꾸러미) 권장 * 증정품은 행사 품목 샘플 지급 혹은 1+1 행사 등으로 진행하고 행사 품목과 관련 있는 증정품(식품, 공산품 등)에 한해 인정	○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 ○ 증정품 관리대장(수량명시), 사진 첨부 * 경품행사 진행 시, 사전에 행사계획 제출 및 협의 필요 ○ 포인트, 쿠폰 등 마케팅내역 및 관련 증빙

지원항목	세부내역	제출서류
시식행사 관련비용	○ 행사관련 홍보·판촉요원 고용(통역포함) ○ 지원한도(1일/1인) USD150 내 지원 *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징구 애로 시 해당 국가의 제출 가능한 증빙으로 대체 가능 ○ 시식용 식품 및 시식관련 비품 - 시식용 식품은 전체 배정승인 예산의 최대 20% 한도 지출 - 시식 관련 비품 구매는 소모품 구매가 원칙이며, 자산성 비품의 구입은 불허	○ (고용업체) 업체 발행 증빙 서류 - 판촉요원 이름, 근무매장·일수, 지급액 등 명시 * 고용업체 활용 시 신분증, 개인별 활동사진 생략 가능 ○ (직접고용) 주관사 직접 고용 시, 판촉요원 개인별 대금수령증 - 판촉요원 이름, 근무매장·일수, 지급액 명시하여 판촉요원 서명날인 - 신분증 사본 또는 판촉요원 개인별 활동 ○ [결과보고] 시식행사 사진 ○ 시식용 식품 증빙은 행사기간 동안 유통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영수증 또는 납품증명서(유통매장 확인필) 제출 *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행사매장 시식행사 사진 첨부
상품개선	○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비용 - 선정 이후 개발·개선된 디자인 건에 한함 - 수출국 라벨링 규정에 따른 현지 라벨링 개선 포함 필수(스티커 형식의 라벨링 개선 불인정) - 국문 결과물 정산 불인정 * 품목 특성상 현지 모조품과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인삼류 등) 국문 결과물 인정	○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전후 결과물 사진 제출 ○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 -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포함 ○ 필요시 모조품 구별 관련 증빙 제출
	○ 일반규격에서 특화규격으로 변경을 위한 패키지(재작업) 비용	○ 용역 업체와의 계약서, 송금증, 재작업 결과(전후 사진, 규격 정보)
거래 알선비	○ 바이어 및 수출기업 리스트를 보유한 전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비용 등	○ 전문 플랫폼 내 상품 상세 페이지, 견적서, 영수증 등 서비스 구매 증빙 서류 등 * 서비스 구매하여 매칭된 대상과 판촉 시 정산
현지 저운송비 (해외지사)	○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내륙지역 냉동·냉장 유통비	○ 출고 내역서 ○ 화물운송장(물품내역 포함), 운송업체 청구서(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증빙

* 지원항목 세부기준은 판촉행사 현지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aT 협의가 필요함

* 영수증의 수신자가 지원업체와 상이한 경우 어떤 관계인지 결과보고서에 명기

* 항목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aT와 협의 필요

* 한도가 있는 항목의 경우, 지원비율 적용 후 항목 한도 내 지원

○ 사업의무액 및 환율 관련 증빙

제출서류	내용
공통	○ 사업 의무액은 국고 지원금액의 1배 ○ 수입증빙서는 수입자(구매자)와 주관사명이 일치하여야함
수출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증빙서	○ 국고지원액의 1배 이상의 수입신고서(CIF 기준) - 유통매장이 직접 수입하지 않아 수입 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사기간 매출실적을 수입실적으로 활용 - 상품명, 개수, 단가, 총매출액 등이 포함된 매출실적 증빙 제출 - 공식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되, 인보이스 제출시는 B/L첨부(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수출신고필증 제출) ○ 벤더일 경우 수입상과 거래관계 증빙(계약서 등) 및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 시 인정 ○ (온라인 판촉) 온라인몰 및 O2O 매장 발행 매출액 (행사기간 한정) 필수제출 - 상품명, 개수, 단가, 총매출액 등이 포함된 매출실적 증빙서류 * 현지 온라인몰 정책 등으로 인해 온라인몰 발행 증빙이 불가할 경우 aT 사전협의 필요
환율적용	환율 : 해외판촉 행사기간 동안 KEB하나은행 최고고시 전신환송금 (보내실 때) 평균 환율 적용, 단 비고시환율 국가는 현지 중앙은행의 원화 환산 환율 평균환율 적용

○ 수출입실적 인정기간

수출입실적 인정기간	○ 수입실적 : 행사기간 전 60일 + 행사기간 ○ 수출실적 : 운송기간(15일) + 행사기간 전 60일 + 행사기간
------------	--

* 행사국가, 매장, 품목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요청 문서 aT로 제출 후 승인 절차 필요

* 연내 수출입신고 완료해야함(실적 인정기간 : ~2026.12.31.)

참고 2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 대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92개사('25.5.1 기준)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 변경 시, 해당 변경 목록을 적용
(표 내 식품 관련 기업 음영 처리)

구분		기업 집단명
공시 대상 기업 집단 (92)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46)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지에스, 신세계, 한진, 케이티, 씨제이, 엘에스, 카카오, 에이치एम, 두산, DL, 중흥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에쓰-오일, 미래에셋, 쿠팡, 현대백화점, 한국엔컴퍼니그룹, 부영, 영풍, 하림, 효성, 장금상선, SM, 에이치디씨, 호반건설, 두나무, 케이티앤지, 코오롱, 케이씨씨, DB, 넥슨, 오씨아이, 엘엑스, 세아, 넷마블, 이랜드
	非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46)	교보생명보험, 한국지엠,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대방건설, 태영, 삼천리, KG, 에코프로, HL, 동원, 아모레퍼시픽, 태광, 크래프트, 글로벌세아, 한국항공우주산업, 엠디엠, 소노인, 테네셔널, 애경, 동국제강, BS(舊 보성), 삼양, 엘아이지, 중앙, 유진, 고려에이치씨, BGF, 대광, 반도홀딩스, 대신, 오케이금융그룹, 하이트진로, 농심, DN, 현대해상화재보험, 신영, 파라다이스, 아이에스지주, 하이브, 한솔, 삼표, 사조, 원익,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영원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제품 단독 취급 시 50% 지원
- * 단,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에 따라 농협계열사 대기업 미적용
 - (참고-제7항)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